

2026년도 제2회 서울교육대학교 한시임기제공무원(행정7호) 경력경쟁채용시험 공고

2026년도 서울교육대학교 한시임기제공무원 행정7호 경력경쟁채용시험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여 시행하오니 역량 있는 분들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2026년 5월 15일
서울교육대학교 총장

1 임용예정인원 (1개 직급, 총 1명)

임용예정직급	선발예정인원	채용기간	근무예정부서(근무지)
한시임기제7호 (행정)	1명	채용일 ~ 2027. 6. 15.	서울교육대학교

※ 근무시간 : 주35시간, 월~금(09~17시, 점심시간 12시~13시)

2 임용예정직무

채용분야	임용예정직급	담당 업무
행정	한시임기제7호 (행정)	○ 대학 행정 업무 ○ 기타 부서장이 정하는 업무

※ 임용예정직위 관련 자세한 내용은 '직무기술서'(붙임2) 참조

3 근거 법령

-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공무원임용시험령, 공무원임용규칙, 국가공무원 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 지침(인사혁신처 예규) 등

4 응시 자격

가. 공통요건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결격사유 및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 법령에 의하여 응시 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 ☞ 응시 결격사유 및 응시 자격 정지 등 관련 세부 규정은 “붙임1” 참조
-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
 - * 복수국적자(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가진 사람을 말함)는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3 제2항 및 공무원임용령 제4조에 따라 임용일 전까지 외국국적을 포기해야 함
- 18세 이상(2008.12.31. 이전 출생자)의 연령에 해당하는 자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최종시험예정일 기준 6개월 이내 전역(소집해제) 예정자 포함
-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서 취업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자
 -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나. 응시자격요건 [최종시험(면접시험) 예정일 기준]

채용분야	자격요건	
한시임기제 7호(행정)	경력	○ 「공무원임용령」 제16조제6항 [별표4의2]에 따라 <u>아래 자격기준을 1개 이상 충족하는 자</u> 가.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6개월 이상 임용 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나. 전문대학의 졸업자 등으로서 졸업 후 1년 이상 관련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다. 1년 6개월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라. 8급 이상 또는 8급 이상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서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직무분야/관련분야 : 일반행정, 사무관리 - 경력증명서상에 관련 직무분야가 담당업무로 근무기간과 함께 정확히 명시되어야 함 (불명확할 경우 불인정될 수 있음에 유의) - 경력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법인(외국법인 포함) 및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2조에 따른 민간단체, 민간기업에 소속되어 근무한 경력만 인정 (개인사업자나 개인사업체에 소속된 경력은 불인정)

다. 우대요건 등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채용분야	우대요건
한시임기제 7호(행정)	○ 직무 관련분야*(행정) 근무경력 - 응시자격요건 충족 이후 초과되는 관련분야 근무경력에 따라 차등 배점 * 직무분야/관련분야: 일반행정·사무관리 등 관련

☞ 임용예정직위, 응시자격요건 및 우대요건 등 관련 사항은 “붙임2” 참조

[응시자격요건 안내사항]

○ 기본사항

- '응시자격요건(경력)에 기재된 사항 중 1개 이상'에 해당되면 응시 가능
- 응시자격요건에 해당하는 경력의 계산 여부는 **최종시험(면접) 예정일 기준**으로 판단함
- 현재 근무중인 경력은 **최종(면접)시험 예정일**을 근무기간 종료일로 하되, 서류 제출 이후 퇴사·이직 등으로 경력요건 미충족시 최종합격에서 제외될 수 있음

○ 경력의 범위

- 경력요건은 **최종경력을 기준으로** 시험 공고일 현재 퇴직 후 **10년이 경과되지 아니하여야 함**. (「공무원임용령」 제16조제2항)
- '경력'은 해당 응시자격요건에 제시된 '**관련분야 경력**'을 의미함.
- **관련분야 경력은 경력증명서 상 '근무기간(전임여부 및 주당 근무시간 포함)과 담당업무가 명시'된 경우에 한하여 경력을 인정되며, 기재 내용이 불명확할 경우 불인정될 수 있음에 유의**
 - ※ 경력증명서 제출 시, **해당기관 발급 확인자의 소속부서, 성명, 연락처 기재 必**
 - ※ 비전임 및 시간제 근무경력은 경력산정을 위하여 **주당 근무시간을 명시**하여 제출
 - ※ **기관폐업**으로 경력증명서를 발급 받기 어려운 경우, 관련경력을 **입증할 다른 서류로 보완**해야함.
 - ① 폐업사실증명서, ② 4대보험자격득실이력확인서* 중 1종, ③ 소득금액증명서,
 - ④ 관련분야 근무경력 증빙서류(근로약정서, 인사기록카드, 업무분장내역 등) 필수 제출
 - * 고용보험(피보험자격 내역서), 국민연금(가입이력 포함된 가입증명서), 건강보험(가입자 자격득실확인서), 산재보험(근로자 고용정보 확인서)
 - ※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 공공기관 ▲ 법인(외국법인 포함) 및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민간단체 ▲ 국제기구 또는 국제단체에 소속되어 수행한 해당 응시자격요건에 제시된 직무분야 경력을 의미하며, 개인사업자 경력은 인정되지 않음
- 정규직 또는 상근직으로 근무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임용예정 직무분야에서 활동한 실적이 있는 경우, 해당 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임용자격 기준에 해당하는 경력에 포함시킬 수 있음
 - ※ 시간제로 근무한 경력은 근무시간(주40시간 기준)에 비례하여 경력의 일부를 인정함.
(예 : 4년간 주20시간 근무한 경우 : 4년×(20시간/40시간) = 2년 인정)

5 시험 방법

가. 서류전형

- 임용예정 직위별로 정하고 있는 자격요건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류전형위원회에서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
 - ※ 서류전형 기준 관련 자세한 사항은 채용예정직위별 응시자격요건, 우대요건 및 직무기술서 참고
-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5배수 이하일 경우, 소극적 서류전형을 실시하여 자격요건 충족자 전원 합격
- 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5배수 초과일 경우, 적극적 서류전형을 실시하여 선발예정인원의 5배수를 합격자로 결정
 - ※ 동점자 발생으로 서류전형 합격예정인원을 초과한 경우, 그 동점자를 모두 합격처리

나. 면접시험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검증을 위해 4가지 평정요소별로 상, 중, 하 평정
-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자 중에서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 (평가방법) 면접항목별 ‘상·중·하’로 평정
 - (평가요소) ① 소통·공감, ② 헌신·열정, ③ 창의·혁신, ④ 윤리·책임
 - (평가방식) 개별면접으로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등을 토대로 질의·응답
 - (최종합격자 결정)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4개 항목 중 2개 이상을 ‘하’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미흡)로 평정한 때에는 불합격, 면접위원의 전체 평정 성적을 집계하여 ‘상’의 개수 많은 순으로 선발예정인원에 해당하는 합격자를 결정함 (‘상’의 개수가 동일할 경우 ‘중’의 개수가 많은 순위로 결정)

6 시험 일정

구분	시험공고	원서접수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면접시험	최종합격자 발표
일정	‘26. 5. 15.(금) ~5. 26.(화)	‘26. 5. 21.(목) ~5. 26.(화)	‘26. 6. 4.(목) (예정)	‘26. 6. 12.(금) (예정)	‘26. 6. 19.(금) (예정)

- 본 시험일정은 응시인원, 시험장 상황, 서류검증 소요기간 등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면접시간 및 장소 등은 서류전형 합격자 공고 시 발표 및 서류전형 합격자 대상 별도 개별통보 예정
- 서류전형 합격자 명단 및 최종합격자 명단은 본교 홈페이지에 게재 예정
-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합격취소, 임용결격사유, 임용 당일 퇴직 등으로 임용되지 못하거나, 최종합격자가 임용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퇴직하여 결원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에서 면접시험 평정성적 우수자 순으로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7 응시원서 접수 및 제출서류 안내

가. 접수일시 및 방법

- 접수일시 및 시간 : 2026. 5. 21.(목)~5. 26.(화) 9:00~18:00 [점심시간(12:00~13:00) 제외]
※ 원서접수 마감일 18:00 이전 도착분에 한하며, 18:00 이후는 접수하지 않음
- 원서접수 및 제출방법 : 등기우편 접수 및 방문접수(서울교육대학교 총무처)
※ 등기우편접수 시 봉투 겉표지에 '한시임기제 응시원서 재중' 기재
※ 등기우편 접수는 접수 마감일 우체국 소인분(빠른등기)까지 유효(반드시 익일특급 등기우편 접수)하며, 택배 및 퀵서비스 등으로는 접수하지 않음
- 등기우편접수 주소 : (06639)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96 서울교육대학교 대학본부 6층 총무처 총무팀 인사담당(봉투 겉표지: "한시임기제 7호 응시원서 재중" 기재)
- 문의전화 : 02-3475-2239
- 응시원서는 붙임 응시원서 작성요령에 따라 구체적으로 작성하여야 함
※ 우편 및 방문접수자의 "응시번호"는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전까지 휴대폰 SMS로 통보

나. 제출서류 각 제출서류별 작성 내용 등은 "붙임3" 참조

구분	제출서류	비고
공통사항 (필수제출)	응시원서(정부수입인지(수수료 7,000원) 첨부)	【별지서식 1호】
	이력서	【별지서식 2호】
	자기소개서	【별지서식 3호】
	직무수행계획서	【별지서식 4호】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정보제공 동의서	【별지서식 5호】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별지서식 6호】
	주민등록초본	남성의 경우에 한함 병역사항 포함된 서류 제출
	경력(재직)증명서 필수조건을 입증하는 경력은 필히 제출 ※ 추가 경력은 해당자만 제출	【별지서식 7호】
최종학력 졸업증명서* 사본 1부		

※ 필수서류 미제출 시 서류전형 응시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여 미응시 처리될 수 있음

* 최종학력 졸업증명서(학위증)은 응시요건 확인, 각 전형위원 선정 시 이해관계 배제하기 위해 활용

다. 유의사항

- 응시자는 자격요건과 임용예정직무 등이 적합한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필수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서류전형에서 응시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응시자가 접수기간 중에 또는 접수마감일 다음날부터 3일 이내에 응시의사를 철회한 경우에는 납부한 응시수수료의 전액을 반환하여 드립니다.
- 최종합격자 발표 이후 응시자(확정된 채용 대상자 제외)가 원본으로 제출된 서류의 반환을 원하는 경우 채용서류 반환 청구 시 관련 서류를 반환하여 드립니다. 단, 원본 반환 시 사본은 시험실시기관에서 일정기간 보관됩니다.
※ 제출된 원본 서류는 최종합격자 발표 후 1개월 이내 불합격자 중 희망자에 한하여 반환
- 응시원서 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 합격자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귀책 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 일정과 안내사항, 합격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8 임용예정일, 채용기간 및 보수 관련 사항

- 임용 예정일 : 2026. 5월중 예정이나, 기관 사정 등에 따라 변동 가능
- 채용기간 : 채용일 ~2027. 6. 15.
- 근무시간 : 월 ~ 금 09:00~17:00 / 주 35시간(1일 7시간)
※ 업무 특성에 따라 협의하여 근무시간 조정 가능
- 보수 : 「공무원보수규정」 별표30의2에 따라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지급
※ 2026년 기준 : (7호)2,548,800원 × 7/8시간
- 수당 :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22조의2에 따라 직급보조비,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시간외근무수당은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지급하되, 정액급식비는 출근일수에 비례하여 산정 지급
- 4대보험(국민건강보험, 공무원연금, 고용보험) 가입
※ 단, 「고용보험법시행령제3조의2」에 따라 고용보험은 당사자가 희망하는 경우, 임용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한하여 가입할 수 있으며, 동 기간이 지났을 경우에는 가입할 수 없음

9 안내 및 참고사항

-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데 적격자가 없는 경우 전형을 거쳐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시험을 고의로 방해하거나, 허위사실 기재, 증명서 위조, 부정행위 공모 및 청탁 등으로 시험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경우에는 국가공무원법 제84조의2,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5장,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장, 형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임용시험에 있어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시험에 관한 소명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는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에 따라 당해 시험을 정지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5년간 동 령에 의한 시험, 그 밖의 국가공무원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 자격을 정지합니다. 부정행위로 처분 받을 경우 다른 공무원 시험 실시기관이 조회할 수 있도록 인사혁신처에 개인정보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 공무원임용령 제13조의2의 임용추천의 유예는 본 시험 합격자에게는 준용되지 않습니다.
- 최종합격자로 결정되더라도 신원조사(조회), 공무원채용신체검사 등에서 공무원으로서 부적격으로 판명될 경우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본 시험계획은 불가피한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 시험일 7일전 까지 최초공고 매체에 공고할 예정입니다.
- 응시자가 선발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에는 재공고 할 수 있습니다.
- 국가공무원법 제45조의3 및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의2에 따라 누구든지 법령을 위반하여 채용시험에 개입하거나 채용시험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등 채용시험의 공정성을 해치는 행위로 인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그 행위로 인하여 합격하거나 임용된 사람의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확인된 피해자를 추가로 합격시키거나 시험의 응시기회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 누구든지 경력경쟁채용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변조하여 시험 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부정행위를 알게 된 때는 인사혁신처에 온라인 신고할 수 있습니다.

◁ 경력경쟁채용시험 국민제보 ▷

인사혁신처 홈페이지(www.mpm.go.kr)

- 참여민원 - 신고센터 - 인사신문고 - 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국민제보

- 기관 폐업으로 경력증명서를 발급받기 어려운 경우, 관련 경력을 입증할 수 있는 다른 서류*로 보완하여야 합니다.

* ① 관련분야 근무경력 증빙 자료(근로약정서, 인사기록카드, 업무분장 내역 등), ② 폐업사실증명서, ③ 4대보험자격득실이력확인서 중 1종, ④ 소득금액증명서 → ①, ②, ③, ④ 모두 제출해야 함

참고 업자에 대한 업종 등의 정보내역 사실증명서 발급 방법(hometax)

① 폐업회사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아는 경우 :
- 민원증명 → 민원증명-사실증명신청(1번) → 사실증명(폐업자에 대한 업종등의 정보내역)

② 폐업회사의 사업자등록번호를 모르는 경우 :
- 민원증명 → 민원증명신청-소득금액증명(2번) → 근로자소득용 발급(발급기한 설정) ⇒ 폐업회사 사업자번호 확인 → 이하 과정은 ①과 동일

- 기타 문의사항은 서울교육대학교 총무팀(☎02-3475-2239)로 문의 바랍니다.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국가공무원법」 부칙 제2조(결격사유 및 당연퇴직에 관한 적용례)】

제33조제6호의3·제6호의4 및 제69조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저지른 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받거나 파면·해임된 사람부터 적용한다.

【「공무원임용시험령」 제15조(응시 결격사유 등)】

- ①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는 사람은 임용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 ② 제1항의 응시 결격사유 해당 여부는 해당 시험의 최종시험 시행예정일(이하 “최종시험예정일”이라 한다)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다만, 비다수인대상 채용시험으로서 시험요구기관의 장과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다른 경우는 시험요구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부정행위자 등에 관한 조치)】

- ① 임용시험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이나 그 밖에 국가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한다.
 1.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본인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행위
 2. 대리 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 시험에 응시하는 행위
 3. 통신기기, 그 밖의 신호 등을 이용하여 해당 시험 내용에 관하여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하는 행위
 4. 부정한 자료를 가지고 있거나 이용하는 행위
 5. 병역, 가점, 영어능력검정시험 및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성적에 관한 사항 등 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6. 제5조제4항에 따른 체력을 실기의 방법으로 검정하는 실기시험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지약물을 복용하거나 금지방법을 사용하는 행위
 7. 그 밖에 부정한 수단으로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시험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붙임 2

임용예정직위 직무기술서(행정9호)

직무군	직무분야	임용예정 직급	선발예정인원
행정	대학 행정 업무	한시임기제 7호	1명

임용예정기관명
서울교육대학교

주요 업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학 내 행정(사무)업무 ○ 기타 부서장이 정하는 업무

필요 역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통 역량) 공직윤리(공정성, 청렴성), 공직의식(책임감, 사명감), 고객지향마인드(공복의식) ○ (직급별 역량) 조정능력, 문제해결력·관계구축력, 의사소통능력 ○ (직렬별 역량) 정보관리능력, 분석력, 집행관리능력, 조정능력

필요 지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정 및 회계 관련 지식 및 관계법령 해석능력 ○ 문서작업을 위한 컴퓨터 활용능력 ○ 보고서 작성 등 행정실무능력

응시자격요건 및 우대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무원임용령」 제16조제6항 [별표4의2]에 따라 아래 자격기준을 1개 이상 충족하는 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6개월 이상 임용 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나. 전문대학의 졸업자 등으로서 졸업 후 1년 이상 관련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다. 1년 6개월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라. 8급 이상 또는 8급 이상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서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직무분야/관련분야 : 일반행정, 사무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대요건) 직무 관련분야* 근무경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응시자격요건 충족 이후 초과되는 관련분야 근무경력에 대해서 평가, 기간별 차등배점 * 직무분야/관련분야 : 일반행정, 사무관리

붙임 3

제출서류 안내

응시원서에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할 서류

(외국어로 발급된 증명서일 경우 반드시 한글번역본을 함께 첨부)

⇒ 직위별로 응시요건에 따라 필수서류가 다르므로, 직무기술서 등을 참고하여 필수사항은 관련 증빙서류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

구 분	내 용
1. 응시자 제출서류 체크리스트	○ 응시자가 제출하는 서류 목록을 체크하고 이하 제출서류 맨 앞에 합철하여 제출(이하 제출서류 순서대로 배치)
2. 응시원서 1부 : 필수서류 (별지서식 제1호)	○ 응시수수료 - 정부수입인지 를 응시원서에 부착 또는 전자수입인지 첨부 - 6·7급, 연구사 : 7,000원 상당 정부수입인지 부착 - 가까운 우체국, 전자수입인지 사이트 (www.e-revenuestamp.or.kr) 등을 통해 발급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수급자 및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사람은 응시수수료를 면제 하오니, 해당자는 수입인지 대신 해당 증명서 제출 ○ 상단 오른쪽 자필 서명 하여 제출
3. 이력서 1부 : 필수서류 (별지서식 제2호)	○ 별지서식 제2호 작성 - 응시자격요건 및 우대사항 중 본인에게 해당하는 사항만 작성 - 작성요령을 참고하여 작성하되, 이력서 상의 경력·학위 등은 증빙서류로 입증될 경우에 한하여 인정되므로, 경력증명서 등 증빙서류 제출 필요
4. 자기소개서 1부 : 필수서류 (별지서식 제3호)	○ A4 2매 이내로 작성
5. 직무수행계획서 1부 : 필수서류 (별지서식 제4호)	○ A4 2매 이내로 작성
6. 개인정보 제공·이용 동의서 각 1부 : 필수서류 (별지서식 제5호)	○ 자필 서명 필수
7.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1부 : 필수서류 (별지서식 제6호)	○ 자필 서명 필수

구 분	내 용
8. 주민등록초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남성 필수, 병역사항 포함된 서류 제출
9. 경력(재직) 증명서 각 1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련분야 경력으로서 근무기간, 직급, 직위 및 담당업무 등이 정확히 기재된 경력(재직) 증명서에 한해 인정됨 ○ 현재 근무 중인 경력은 공고일 이후 발급한 증명서 제출 ○ 증명서류 미제출 및 미비(담당업무 미기재 등)한 경우와 회사의 폐업 등 개별적 사유로 경력을 증명하지 못할 경우, 해당 경력 불인정 될 수 있음 ○ 발급 확인자 연락처 반드시 기재(미포함시 하단에 별도 기재) ○ 외국기관 발급 증명서는 공증 번역된 요약본 첨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채용분야와의 관련성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경력으로 인정받지 못할 수도 있으므로, 경력증명서의 담당분야 내용이 모호하거나 불분명한 경우 채용분야 직무와 관련된 임무를 수행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별도의 증빙서류(근로약정서, 인사기록카드, 업무분장내역 등)를 첨부하여야 함 ※ 발급 확인자 연락처 포함(미포함시 하단에 별도 기재)
10. 최종학력 졸업증명서(학위증) 사본 1부 ⇒ 전형위원 제척·기피, 응시요건·우대요건 확인 등을 위해 활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사 이상 졸업증명서(학위증) 사본(전공분야 표시) ○ 해외 학위의 경우 아포스티유 혹은 영사 확인 필요

* 제출서류는 상기 번호 순서대로 정리한 후, 클립 혹은 집게 1개로 고정하여 제출 (스테플러사용금지)

<별지 서식 1호>

응 시 원 서

본인은 서울교육대학교 한시임기제공무원 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원서를 제출하며 다음 사항을 서약합니다.

아래 기재사항은 사실과 다름없으며 만일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기재하였을 때에는 관계법령에 의거 당해시험이 정지 또는 무효가 되고 향후 5년간 응시자격이 정지되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26년 월 일

응시인

(서명 또는 인)

서울교육대학교총장 귀하

응 시 원 서(원본)			
응시직급 및 분야		<u>한시임기제 행정7호</u>	
응시자격		<input type="checkbox"/> 경력① <input type="checkbox"/> 경력② <input type="checkbox"/> 경력③ <input type="checkbox"/> 경력④	
※응시번호	<i>채용담당자 기재란</i> (기재하지 않음)	성 명	(한글) (한자)
생년월일		복수국적 해당여부	
주 소	(우)		정부수입인지 붙이는 란
전자우편			
전 화 (휴대전화)			

응 시 표			
(서울교육대학교 한시임기제공무원(9호) 채용시험)			
응시직급 및 분야		<u>한시임기제 행정7호</u>	
응시자격		<input type="checkbox"/> 경력① <input type="checkbox"/> 경력② <input type="checkbox"/> 경력③ <input type="checkbox"/> 경력④	
※응시번호	<i>채용담당자 기재란</i> (기재하지 않음)	성 명	(한글) (한자)
주 의 사 항			
1. 응시표를 받는 즉시 응시번호와 접수인 날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2. 시험당일은 응시표, 주민등록증 등을 지참하고 시험시작 10분전까지 시험장소에 집결하여야 합니다.			
※보완사항	를(을) 월 일까지 보완하여야 합니다.		

응시원서 작성요령

1. 응시원서 작성시 응시자 부주의로 인한 잘못된 기재나 표기는 응시자 본인의 불이익이 된다.
2. 『응시원서』는 아래의 《작성요령》에 따라 작성한다.

《 작 성 요 령 》

- ① 「※응시번호」 : 기재하지 않음
 - ② 응시직급 및 분야 : 공고문과 붙임 파일을 참고하여 응시하고자하는 직급을 기재 (예) 한시임기제공무원7호(행정)
 - ③ 응시자격 : 공고문과 붙임 파일의 응시자격요건을 참고하여 응시자격요건 기재
 - ④ 주소 : 현재 거주하는 곳(우편물 수령 등)을 정확히 기재함
 - ⑤ 성명·생년월일·전자우편·(휴대)전화 : 빠짐없이 정확하게 기재함
 - ⑥ 복수국적 : 복수국적자의 경우 취득한 외국국적명 기재, 복수국적자가 아닐 경우 ‘해당없음’ 기재
 - ⑦ 정부수입인지 : 6·7급/연구사/전문경력관은 7,000원 상당의 정부수입인지(우체국에서 구입)를 부착하되, 여러 매(枚)일 경우 금액을 확인할 수 있도록 붙임
-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사람으로 응시수수료를 면제받을 경우, 수입인지 대신 해당 증명서 첨부

이력서 작성요령

□ 『이력서』 는 아래의 요령에 따라 빠짐없이 작성하여야 합니다.

- ① 응시번호 : 기재하지 않음
- ② 응시분야 : 응시하고자하는 직급분야 작성
- ③ 응시자격요건 : 공고문과 붙임 파일의 응시자격요건을 참고하여 기재
- ④ 응시자격 : 해당자에 한하여 작성

【경력】 응시자격요건에 해당하는 경력만 기재

(예. 〇〇분야 경력 요건 중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응시하는 자가 관련 직무분야에서 3년의 경력이 있을시, 응시자격에 해당하는 6개월(1년)의 경력은 '2.응시자격'의 경력란에 기입하고, 응시자격요건 충족 이후 2년6개월(2년)의 경력은 '3.우대요건'의 경력란에 기재)

- 담당예정업무와 관련된 경력 및 실적을 기재

* 본인이 기재한 사항에 대해서는 사실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니 증빙 가능한 사실만 기재

-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상의 내용과 동일하게 작성(근무기관, 근무기간, 직위, 담당업무, 근무형태)

※ 현재 근무 중인 경력은 최종시험(면접) 예정일을 근무기간 종료일로 하되, 서류 제출 이후 퇴사·이직 등으로 경력요건 미충족 시 최종 합격에서 제외될 수 있음

- 경력기간 중 휴직기간이 포함되었을 경우 휴직기간 및 사유를 별도 기재

- 직위(급)는 재직기간 중에 있었던 모든 직위(급)을 나누어 기재

- 근무형태는 '전임'(통상근무자) 또는 '비전임'(단시간근무자)으로 표시하되, 비전임일 경우 주당 근무시간 표시, 시간제 근무의 경우 근무시간에 비례해서 경력의 일부를 인정할 수 있음

* 예시) 통상근무시간이 주40시간인 회사에서 4년간 주 20시간 시간제 근무한 경우 : 2년 인정

- ⑤ 우대요건 : 해당자에 한하여 작성

【경력】 응시자격요건으로 제출한 경력 외 별도경력을 기재

- 담당예정업무와 관련된 경력 및 실적을 기재

※ 현재 근무 중인 경력은 원서접수 마감일을 근무기간 종료일로 하되, 서류 제출 이후 퇴사·이직 등으로 경력요건 미충족 시 최종합격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응시자격에 해당하는 경력과 동일한 방법으로 기재

자 기 소 개 서

성 명		응시직급 및 분야	한시임기제 7호(행정)
-----	--	-----------	--------------

* 작성하실 때 아래 내용은 삭제하시기 바랍니다.

※ 작성요령

- 자기소개, 지원동기, 생활신조와 가치관, 성품, 장단점, 앞으로의 각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자유롭게 기재
- A4용지 2매 이내로 하고, 워드프로세서를 사용하여 작성
- 글씨크기: 13, 줄간격 160%, 글씨체: 휴먼명조
- 매 장마다 쪽번호 부여
- (유의사항) 작성 시 학교명, 출생지, 부모직업 등 개인 신상을 직·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기재할 경우 불이익(감점)을 받을 수 있음

2026. . . .

작 성 자: (서명)

직 무 수 행 계 획 서

성 명		응시직급 및 분야	한시임기제 7호(행정)
-----	--	-----------	--------------

* 작성하실 때 아래 내용은 삭제하시기 바랍니다.

※ 작성요령

- 시험공고문에 명시된 담당예정 업무와 연계하여 작성
(본인이 해당직위에 적합하다고 판단하는 이유, 해당직위와 관련있는 경력, 채용예정분야에서 무슨 일을 어떻게 수행할지 계획)
- A4용지 2매 이내로 하고, 워드프로세서를 사용하여 작성
- 글씨크기: 13, 줄간격 160%, 글씨체: 휴먼명조
- 매 장마다 쪽번호 부여

2026. . . .

작 성 자: (서명)

개인정보 제공·이용 및 제3자 정보제공 동의서

1.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본 기관에서는 공무원 채용 및 관리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 제1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하고자 합니다.

- (1)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목적: 공무원 채용 및 관리
- (2) 개인정보 수집 항목(필수): 성명, 주민등록번호*, 휴대폰번호, 응시자격요건에 따른 학력·경력·자격·면허 사항, 4대 보험 자격 득실, 소득금액증명, 외국어성적·논문·수상실적 등 우대요건에 해당하는 사항
- (3)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5년**

개인정보 활용 목적 달성 이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유 후 파기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과 관련하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다만 동의거부 시 공무원 채용 및 임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 주민등록번호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수집·이용합니다.

개인정보 처리사유	개인정보 항목	수집 근거
채용심사를 위한 본인확인 및 심사자료	주민등록번호	「공무원임용시험령」제53조

2. 민감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공무원 채용 및 관리를 위해 개인정보(민감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 (1) 민감정보 수집 및 이용 목적: 공무원 채용 및 관리
- (2) 민감정보 수집 항목: **범죄경력정보**
- (3) 민감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5년**

개인정보 활용 목적 달성 이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유 후 파기

☞ 민감정보의 수집·이용과 관련하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거부 시 공무원 채용 및 임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민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별지 서식 7호>

경 력 증 명 서							
인적 사항	①성 명	한글			생년월일		
		한자					
	②주 소						
경 력 사 항	③근 무 기 간		기 간	④ 직 위 (직급)	소 속 (근무부서)	담당업무(상세기재)	
	부 터	까 지				※상근/비상근 여부 명확히 기재	
	2013.5.1.	2014.1.31.	9개월	대리		수행업무 상세명시 전임/비전임(주근무시간)	
		※년.월.일로 기재					
⑤근무 년한	총 근무기간: 년 월 일			⑥퇴직사유			
⑦상별 사항	포 상			징 계			
	년월일	종 류	기 관	년월일	종 류	기 관	
⑧발급 용도							
위와 같이 경력을 증명합니다.							
2026년 월 일							
(기 관 명) (직인)							

※ 자체서식이 위 내용을 모두 포함할 경우 자체서식으로 제출 가능

발급부서	
직위(직급)	
담 당 자	(인)
연 락 처	